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

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0년 03월 17일)

제3조의2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른 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자격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의2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의2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위원회의 운영”을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심사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기술사제도발전심의회위원회에 통합하는 한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의 제정

(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0년 04월 20일)

제3조제1항제1호를 같은 항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단지형 연립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 및 제3호의 기숙사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제1호의2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로 한다.

제4조의2 중 “증축을 하는 행위를”을 “전유부분을 증축하는

행위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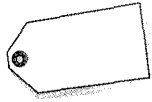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을 동당 연면적 제한이 없는 연립주택으로까지 확대하여 도심 내 1인·2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시켜 서민생활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증축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면서, 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300억원 이상 품질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포함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의 본격적 착공, G20 정상회의 개최 등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입법예고하였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①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 ①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 강화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한국시설안전공단 검토를 거치도록 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를 강화
- ② 건설공사 안전점검에 대한 업체선정 및 관리강화
 - 건설공사중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건설안전점검기관 선정시 발주청 승인의 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 공사중 점검실시 후 발주청등에 통보하고 있는 안전점검실시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도 통보토록 하여 안전관리 강화
- ③ 평가대상 조정 등 시공평가제도 개선
 - 시공평가 대상공사를 100억원이상 건설공사로 하고,
 - 발주청별로 관리하던 시공평가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일괄하여 관리토록 함
- ④ 부실벌점의 불합리한 산정방법 등 개선
 - 부실벌점 산정절차를 단순화하여, 부실벌점 부과시 관리기관(KISCON)에 즉시 통보토록 하고
 - 평균부실벌점산정시 총점검수를 사용하여 평균
 - 대형업체에 유리한 우수현장, 건설업자 등에 대한 부실벌점 경감제도 폐지
- ⑤ 건설공사 안전관리 기준 근거 마련
 - 건설공사 안전관리 관련 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② 책임있는 건설공사관리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

- ① 책임감리시 발주청의 역할강화
 - 책임감리시 발주청의 업무에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지도, 설계변경 사항 확인, 예비준공검사를 추가
- ② 비상주감리원 명칭변경 및 역할강화
 - 비상주감리원의 명칭을 기술지원감리원으로 변경
 - 업무에 시공단계 경제성 검토, 시공상세도 검토를 추가하고, 기술지원감리원 중 책임자를 지정토록 함
- ③ 민투사업의 책임감리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리권 강화
 - 민투사업의 책임감리 계약에 주무관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세부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함

③ 건설공사 품질제고를 위한 품질관리제도 개선

- ①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확대
 - 중급공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 공사로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 확대
- ②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개정
 - 품질관리비 산정 및 사용기준에 현재 품질관리비용이 불명확하여 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비를 명확히 규정
- ③ 품질시험·검사시 자재생산국 관리
 - 품질시험·검사의뢰서에 자재의 생산국을 표기토록 하여 생산국 관리 강화

※ 기타 개정사항

1. 의무 책임감리대상 조정(하수관거, 공동주택 등을 제외, 22개→18개)
2. 사업시행자의 출자기업 감리수행 제한
3. 가시설용 철근 및 H형강의 품질인증제품 의무사용 제외 등